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22 발의연월일 : 2024. 10. 4.

발 의 자:이수진・박홍배・이기헌

김동아 · 최기상 · 민병덕

백승아 · 김현정 · 임미애

정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4항 후단).

법률 제 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사용자대표
- 2. 근로자대표
-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임원으	제7조(임원) ①
로서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3	
명을 포함한 <u>15명</u> 이내의 이사	<u>16명</u>
와 감사 1명을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	4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	
연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	
천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	
임이사는 <u>사용자대표,</u> 근로자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표 및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u>에 해당하는</u>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u>전문적 지식이 있는</u> 사람 중에	
서 임명하여야 한다.	
<u><신 설></u>	<u>1. 사용자대표</u>
<u><신 설></u>	<u>2. 근로자대표</u>
<u><신 설></u>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
	제도ㆍ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
	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u><신 설></u>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

	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
	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
	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u>를</u> 받은 사람 1인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